

한국예총 경기도연합회 단체보험 규약

제1조 (목적)

이 규약은 한국예총 경기도연합회(이하 "연합회"라 합니다)가 회원들을 위하여 제공하는 "기업비용보상보험 장례비용보장특별약관" 단체보험 가입을 위한 연합회와 회원간 권리·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.

제2조 (회원자격 및 용어의 정의)

- 1) 연합회는 본 이용약관 및 단체보험규약에 동의하고 가입한 자들을 회원으로 하여 보험가입을 위한 단체(상법 및 보험업법상의 단체보험의 단체)를 구성하며, 보험가입에 동의한 각 회원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합니다.
- 2) 본 규약에 동의한 회원은 이 규약의 당사자가 됩니다.
- 3) 회원은 연합회가 요구하는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본 규약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묻는 박스를 클릭하여 체크표시를 함으로써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는 회원자격을 얻게 됩니다.
- 4) 보험계약에 따른 세부내용은 보험사가 제공하는 보험약관에 따르며 본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연합회가 보험사와 정한 약정에 따릅니다.

제3조 (단체보험의 가입)

- 1) "연합회"는 "회원" 을 대표하여 단체보험 가입에 동의한 "회원" 에 대한 기업비용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며, "연합회"는 "회원"을 대표하여 보험계약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행사합니다.
- 2) "연합회"가 계약자인 단체보험계약에 가입하기를 희망하는 "회원"은 본 규약 및 약관, 상품안내사항을 충분히 읽고 숙지한 후 가입 신청을 하며 보험사와 연합회가 고지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답합니다
- 3) 회원은 "연합회"를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회원을 보험대상자로 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연합회가 일괄로 가입하는 방식에 동의 합니다.
단, 보험은 1년단위로 계약하며, 계약 후 중도 취소는 불가합니다.
- 4) 보험계약에 관한 세부내용은 보험사가 제공하는 보험약관 및 안내사항에 따르며, 기타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"연합회"가 보험사와 약정한 바에 따릅니다.

제4조 (기타사항)

1. 연합회의 기존 서비스 변경, 새로운 서비스 출시, 법령의 개폐, 회원 요구 등의 사정이 있어 이 규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, 회사는 회원들을 위하여 규약을 즉시 변경합니다. 그리고 변경된 규약은 그 즉시 효력을 발합니다.
2. 연합회는 규약 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회원들에게 의견을 구할 수 있으며, 회원들은 이에 성실히 응합니다.
3. 규약 변경을 희망하는 회원은 연합회에 그 구체적 변경안과 이유를 제시하여 규약 변경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. 이에 대하여는 연합회는 전항에 따라 처리합니다.
4. 연합회는 단체보험가입 등 규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는 개별적으로 규약 적용에 부동의 하는지 의견을 구합니다. 이 때 규약에 부동의 하는 회원은 해당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5. 회원은 "연합회"에 단체보험 가입과 관련하여,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"연합회"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.
단 회원탈퇴가 되더라도, 보험은 가입시점부터 1년간 유지됩니다.